

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진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4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정진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최 선, 오현정, 김경우, 이정인,  
이은주, 김상훈, 홍성룡, 송명화,  
김평남 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각종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대관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-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‘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’ 권고 의결(’20. 9. 7.)을 통해 공공시설의 대관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여 대관자에 대한 불공정·불편 요인을 제거할 것을 권고한 바도 있음.
- 이에 대관료 환불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미비한 대관료 반환 규정 및 그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대관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그 사유를 세분화함(안 제38조제4항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#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 본문 중 “대관자”를 “대관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대관자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행사일”을 “사용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
2.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
3.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4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⑤ 대관료 등의 징수,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, 감면기준, 반환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부과·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8조(생태학습관 등의 운영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<u>대관자</u>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행사일</u>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8조(생태학습관 등의 운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대관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대관자”라 한다)</u>----- ---. ----- ----- ----- <u>사용일</u> ----- -----.</p> <p>④ <u>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</u> <u>대관료 전액 반환</u></p> <p><u>2.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</u> <u>대관료 전액 반환</u></p> <p><u>3.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</u> <u>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</u></p> <p><u>4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</u> <u>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</u></p>

④ 대관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요금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 
⑤ 대관료 등의 징수,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, 감면 기준, 반환 등을 준용하여 해당요금 등을 부과·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.

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8조 제4항에서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할 경우 대관료를 차등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함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(2호) 사유

- 대관료 반환규정 신설로 세입이 감소하나 그동안 본 조례에 따른 대관 실적이 없어 대관 취소에 따른 반환금액에 대한 세입감소 추계가 곤란함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     정한섭

분석관(주무관)    공도연

☎ 02-2180-7933

e-mail : ehdus0@seoul.go.kr